

중 합 토 론

■ 박수현 (강원신문 편집국장)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으로 심리에 나갔을 때, 중재 부장과 중재위원들이 특정 언론사와 가진 친분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안이더라도 언론사에 따라 중재위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재위원들의 자질과 선정 기준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해에 지자체에 대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으로 심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보도를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재위원들은 현재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반론보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반론, 정정보도를 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와 관련된 공무원과 업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 결국 제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지만 중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설원태 (경향신문 편집위원)

저는 김정탁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굉장히 수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정정보도가 1단으로 보도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오보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항의로 인해 나간 것이 1단 기사 정도가 아닌지요? 개인적인 항의를 했지만 보도가 정정되지 않았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에도 정정보도문 등에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의 정정보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언론사가 권위적 입장에서 오보를 통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무마를 하고 가능하면 신문에 활자로 실리는 것을 피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잡습니다' 등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면에 정정보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지면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2면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1단짜리 기사를 보면 뭘 잘못했느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 이종근 (제2주제 지정토론자,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

저희에게 신청인이 반론에 해당하는 칼럼 혹은 논문을 신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와서 중재위의 조정 끝에 그것을 신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중재위원님들이 신문지면에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해당 기사의 연속상에서 그 기사를 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바는, 균등하게 노출되는 신문지면과 다르게 인터넷상으로는 한 화면 속에서 노출이 되는 기사의 양이 신문처럼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호의 칼럼 뒤에 반론보도를 실는 것은 도리어 신청인의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다. 반론보도문을 따로 송

고를 하고, 1면에도 한 줄 기사로 기사의 제목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반론보도문과 원 기사 보도도 서로 링크를 걸어 독자들이 그 기사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링크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을 독자가 보는 행위에 걸맞게 링크라는 개념도 받아들여주실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총장)

저희 상담 중에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과 관련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문을 싣는데 인터넷 언론의 경우 한 화면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 한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을 첫 화면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마우스를 쪽 내려서 끝까지 보이는 부분까지 그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에서 첫 화면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 부터 반론이나 정정보도 판결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닷컴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화면의 가장 하단으로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지요? 인터넷 언론시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피해상담을 하다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있으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정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피해구제를 충분히 받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송을 하고 싶는데 조정합의와 더불어서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인에게 조정합의

와 부제소합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신청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저는 중재위원회의 언론관련 인사들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에도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인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출신 기자들이 많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조중동의 인사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지금 언론사들이 자사이기주의, 보수·진보 성향으로 나뉘어 굉장히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언론관련 인사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 위에서 단순히 신청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언론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져서 뭔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단순히 기계적인 잣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위 힘있는 자들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여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D수첩이 광우병 보도를 했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과 같이 힘없는 분들에 대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간의 얼굴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관이나 외교통상부나 힘있는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하여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언론사가 마치 몹쓸 짓을 한 것 마냥 생각되게 만듭니다. 중재위원회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

게 적용하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환 (신청인)

저는 쇠파이프로 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재 정직 3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일 KBS, MBC, SBS에서 제가 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더 아프게 때리려고 속치마를 벗게 했다고 보도했고, 이것이 포털사이트에도 퍼졌습니다. 그 뒤에 지인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접수 후 약 20일 만에 정정보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사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로 때린 것 같이,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과정에서 한 언론사의 기자분을 빼고는 어떤 기자분도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자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보도할 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발제자님 말씀 중에서 정정·반론보도문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포털전담 중재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중재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조금 더 실

효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연감이라던지 보도자료들을 보면 조정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처리가 되었다는 측면은 굉장히 부각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행이 됐는지 질적 분석까지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이행까지도 국민들이나 다른 중재위원들께서 많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위원들은 다들 언론계, 법조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기세미나 혹은 연구모임 등을 자주 가지시고, 실제 사례들을 책자나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하여 다양한 사례 속에서 기준점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정탁 (제1주제 발제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이 지금부터 3년 조금 전입니다. 여기 저와 같은 중재부에 속했던 강영수 부장판사님도 계시지만, 언론인 출신들이 언론을 비판하고, 오히려 박종순 변호사와 강영수 부장님이 '어떻게 언론인 출신인데 저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정말 좋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정말 억울한 시민을 우리가 잘 구제했을 때, 학교가는 길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끝나고 양 당사자간의 악수도 시킵니다. 정말 마음속에 화해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번도 갑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물론, 나쁜 신청인도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재판으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텐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언론이 약하게 대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재위원들이 모두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모든 문제를 선한 신청인과 악한 피신청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바마의 연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두 그룹의 애국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전을 찬성했던 애국자이고, 하나는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애국자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언론인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관계는 완전 기사를 향한 동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말하자면 제재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고 완전 기사를 향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숫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보도가 완전 기사에 가깝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인이 하나도 없을 때가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언론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정중재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그런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권 일 (지정토론자,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박수현 편집국장님께서 지자체 관련하여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반론보도청구에 따른 반론보도 게재와 이후 추후보도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알려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실어주는 게 보도의 원칙입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먼저, 취재원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한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혐의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론보도 게재해주면 안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유종현 (MBC 부장)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4번째,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텔레비전방송을 개국한 나라입니다. 텔레비전은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인데, 비주얼커뮤니케이션에 맞는 언론중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초년병 시절, 매일 밤마다 경찰서를 돌면서 잡범들을 촬영해 수갑 찬 모습들을 방송으로 마구 내보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이런 방송을 하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상권 침해라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사님은 제소된 사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내용을 모두 살핀다고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사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했고, 각 방송사에 미리 주의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5~6년 전, 수사기관 공보관님들, 인권변호사, 각종 시민단체들이 모여 개최된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를 하였고, 당시 방송사들의 피의자보도 관행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잡범들이 사법심리도 들어가기 전인 단순 피의자 신분에서 수갑 찬 모습, 이름, 형사의 조서작성 광경 등까지도 촬영 당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지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문제제기에 알권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초상권이 알권리입니까? 강력범죄, 마약범죄, 반국가범죄 등이 초상권 침해의 제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권리는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후 방송3사가 방송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시정하였고, OECD 회원국답게 방송을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언론중재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인 방송에 맞는 방송인·언론인을 위촉해서, 피신청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조정과 중재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소송으로 가는 것보단 낫다'며 '울며겨자먹기'식의 수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준이라면, 이것만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탁 (제1주제 발제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언론중재위원회의 궁극적 수혜자가 언론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큰 액수로 언론사에 손해배상액 지급을 결정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문 닫게 되는 언론사도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는 신청인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서 기계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편하지만, 언론사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기사를 향한 동반자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원에서도 언론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이념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이념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판결을 하는 부장관 사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두 인용액의 차이가 13배가 된다는 사실은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정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재부의 중재위원 상당수가 전직 언론인이고, 중재부장이 현직 부장관사인 상황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법원의 1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은 중재부 구성원들이 손해배상 조정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일방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발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인용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 중재위원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전직 언론인들이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듯이 보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일반인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조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중재부의 구성을 분리하는 것은 어떨지 말씀드려 봅니다. 피해구제 보도문 사건 담당은 전직 언론인에게 맡기고, 손해배상 조정은 전직 언론인을 배제하는 식으로 중재부의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은 활성화방안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 이정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제가 심리를 해온 경험을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병합청구한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게 되면 신청인이 만족하여 스스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리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의견이 조정되어 손해배상금액이 당초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에 관해 직권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손해배상은 거의 대부분 위자료이다. 그래서 조정에서의 주된 쟁점도 위자료 산정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리 산정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따라서 조정액을 정할 때 신청인의 청구 금액과 유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인용액을 모두 참고하여 피해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발제자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둘째, ‘피해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적절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게 하는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순 (제2주제 발제자,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손해배상 활성화 방안 중에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언론분쟁소송의 경우, 우리 위원회와 법원이 연계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언론분쟁관련 소장을 냈을 때,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넘겨 미리 조정을 거치는 방안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일정한 민사사건을 먼저 조정으로 회부시킵니다.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맡아서 조정이 성립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연계하여 언론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위원이 언론 쪽에 우호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중재부 내에 그런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고,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보호를 적정히 형량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이미 발제문에서 밝힌 조정액이 낮은 이유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이 낮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 중재부 구성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2005년 최초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때, 반대하는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4일 이내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정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 내에 위자료에 관해서 산정기준은 없으나 일응의 기준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신분, 언론보도 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또 그 사람이 공인인지 아닌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보도내용이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띄고 있는지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된 계기의 유형이 일률적이지 않은 만큼 저 역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언론분쟁소송과 관련해 쓰신 논문을 보게 되면, 위자료가 보통 1,000만 원 정도라 밝히고 있고, 평균적으로 2,000만원이 넘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판례상으로 축적된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수궁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은 중재위원들도 위자료 산정액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심리, 결정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산정액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합니다.

■ 양종우 (KBS 사내변호사)

현실적으로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000만원이고 억대가 넘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신청인의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액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을 장려하면서 과감한 조정금액을 정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손해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과감히 조정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낮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진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금 손해배상액 기준 등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기 때

문에 신청인은 5,000만원이라든지 1억의 금액 등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정말로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법원 안에서도, 판사들이 다른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평성을 맞추어 금액을 정할 뿐이어서 일률적인 기준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 작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상권, 인격권 등의 유형별로라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정이 다를 때마다 이를 감안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구성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재부가 5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2인의 언론인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참고하게 되고, 이로써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인 외에도 법률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게 되고, 중재위원이 언론인 출신이라고 해서 그에 관해 다르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도문 뒤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는 문구를 최근에는 신고 있습니다. 언론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의 중재부 등을 분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돼야 조정이 되지, ‘이것은 정정보도만 합의하고 손해배상은 나중에 하자’는 식의 결정을 언론기관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분리하여 하나는 조정을 하고 하나는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정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역시 이 제도는 언론계 쪽에 계신 분들께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구성을 고려해 볼 때도 언론계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 세미나에서도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는 오히려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논리적인 문제라든지 충분히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언론 측에 많이 계시는 만큼,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언론계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기관 혹은 정부기관인 경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재제도 안에서도 이 두가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구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밝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